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33호 2011. 7. 1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30호 인천광역시서구 도로명 변경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719호 공시 송달 공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730호 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73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7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 4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742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 61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07월 0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1. 07. 07.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일부 도로구간 설정·변경 및 도로명 변경

구 분	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로	길	로	길	
도로명 변경	15	13	2	2	13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로부터 ⇒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관리팀 (☎032-56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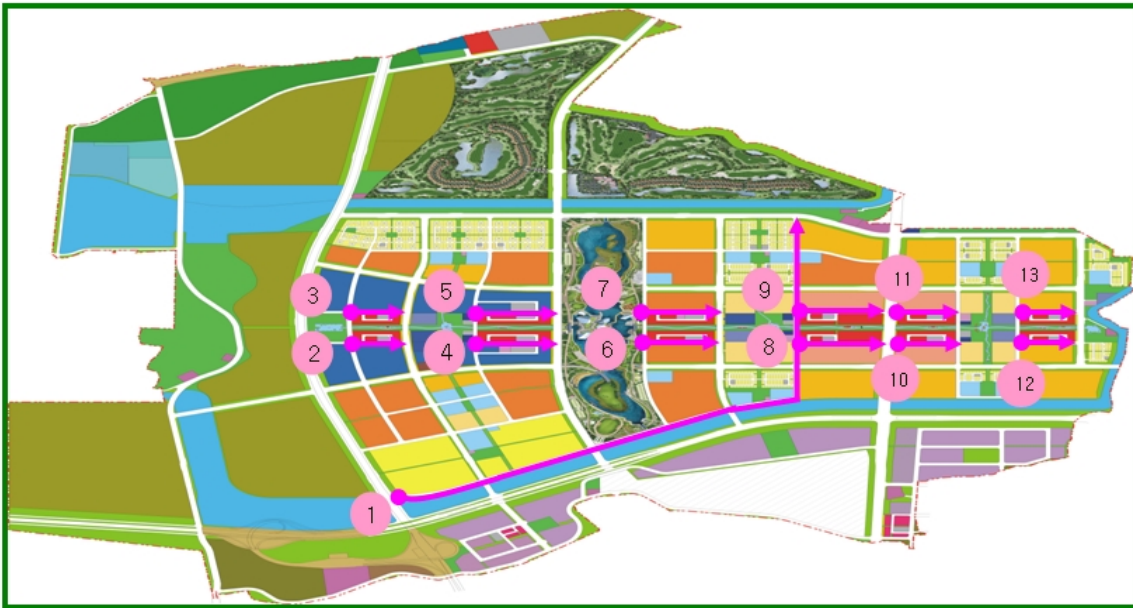
도로명 변경 조서

연번	구분	도로 위계	도로명	관할 행정 구역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중심선	동일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km)	폭(m)				
1	변경전	로	가은로	서구	경서동 982-1	경서동 836-93	3.80	20.0	20	1~373	도면참조	-
	변경후		커널로								도면참조	
2	변경전	로	청일로	서구	경서동 931-2	경서동 935-12	0.50	20.0	20	1~47	도면참조	-
	변경후	길	첨단동로164번길								도면참조	
3	변경전	로	청이로	서구	경서동 832-7	경서동 935-5	0.50	20.0	20	1~47	도면참조	-
	변경후	길	첨단동로192번길								도면참조	
4	변경전	로	청삼로	서구	경서동 945-1	경서동 943-23	0.40	20.0	20	1~39	도면참조	-
	변경후	길	한내로72번길								도면참조	
5	변경전	로	청사로	서구	경서동 943-1	경서동 941-8	0.40	20.0	20	1~39	도면참조	-
	변경후	길	한내로100번길								도면참조	
6	변경전	로	홍일로	서구	경서동 950-14	경서동 950-25	0.40	20.0	20	1~35	도면참조	-
	변경후	길	크리스탈로74번길								도면참조	
7	변경전	로	홍이로	서구	경서동 950-1	경서동 950-12	0.40	20.0	20	1~35	도면참조	-
	변경후	길	크리스탈로102번길								도면참조	
8	변경전	로	홍삼로	서구	경서동 956-10	경서동 956-17	0.40	20.0	20	1~43	도면참조	-
	변경후	길	커널로260번길								도면참조	
9	변경전	로	홍사로	서구	경서동 956-1	경서동 956-8	0.40	20.0	20	1~45	도면참조	-
	변경후	길	커널로288번길								도면참조	
10	변경전	로	연일로	서구	연희동 799-13	연희동 799-23	0.30	20.0	20	1~33	도면참조	-
	변경후	길	중봉대로586번길								도면참조	
11	변경전	로	연이로	서구	연희동 799-1	연희동 799-11	0.30	20.0	20	1~31	도면참조	-
	변경후	길	중봉대로612번길								도면참조	
12	변경전	로	연삼로	서구	연희동 793-13	연희동 793-23	0.30	20.0	20	1~29	도면참조	-
	변경후	길	에메랄드로76번길								도면참조	

도로명 변경 조서

연번	구분	도로 위계	도로명	관할 행정 구역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중심선	동일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km)	폭(m)				
13	변경전	로	연사로	서구	연희동 793-1	연희동 793-11	0.30	20.0	20	1~29	도면참조	-
	변경후	길	에메랄드로102번길								도면참조	
14	변경전	길	서곶로742번길	서구	백석동 산26-4	당하동 1005	477.39	25.0	20	1~45	도면참조	-
	변경후	로	독정로								도면참조	
15	변경전	길	서곶로742번안길	서구	백석동 226	백석동 23-6	476.82	10.0	20	1~25	도면참조	-
	변경후	길	독정로25번길								도면참조	

1. 청라지구 도로명 변경



번호	종전도로명	변경도로명(안)	비고
1	가온로	커널로	
2	청일로	첨단동로164번길	
3	청이로	첨단동로192번길	
4	청삼로	한내로72번길	
5	청사로	한내로100번길	
6	홍일로	크리스탈로74번길	
7	홍이로	크리스탈로102번길	
8	홍삼로	커널로260번길	
9	홍사로	커널로288번길	
10	연일로	중봉대로586번길	
11	연이로	중봉대로612번길	
12	연삼로	에메랄드로76번길	
13	연사로	에메랄드로102번길	

2. 도로명 변경 – 서곶로742번길, 서곶로742번안길



변경전 도로명
서곶로742번길, 서곶로742번안길



변경후 도로명
독정로, 독정로25번길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7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 국유재산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에 따른 동산(예금통장)압류통지문을 귀하에게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7. 0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국유재산 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및 채권추심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1. 7. 5 ~ 2011. 7. 19(15일)
- 송달내용 : 대부료(변상금 등)체납액에 대한 체납자 거래은행 예금통장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내역 : 붙임 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재산관리팀 담당자(☎ 032-560-4163)

압류 및 채권추심 공고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목	금액	비 고
1	나주환	30013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84-25	대부료, 연체료	20,484,470	
2	윤점갑	551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7-30	대부료, 연체료	1,229,870	
3	정영호	580413-*****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70-15	변상금, 연체료	28,940,160	
4	황재호	750304-*****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22-56 나성빌라 B01호	변상금, 연체료	1,354,32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730호

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 공고기간 : 2011. 7. 8 ~ 2011. 7. 22

○ 제 목 : 처분통지(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자 불이행)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하고 처분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				
전화 032-560-4153 FAX 032-560-4159				
서구청 재무과 / 과장 오진중 / 경리담당 강선숙 / 담당자 김미연				
문서번호 : 재무과 - 13181				
발 신 일 : 2011. 06. 28				
수 신 : 수신자 참조				
제 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				
부 정 당 업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석광건설(주)	사업자등록번호	121-81-42136
			법인등록번호	124611-0241692
	주 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1-3 대화빌딩 4층		
	대 표 자	이 제임스 준	주민등록번호	500110-5*****
	주 소	-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조경식재공사업 등	면허·등록번호등	인천남동04-18-02
제 재 내 용	제 재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 재 연 월 일	2011.07.01	만료연월일	2011.12.31
	제 재 기 간	2011.07.01 ~ 2011.12.31 (6개월)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 우리구와 계약한 『불로초등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요청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불이행함에 따라 부정당 제재 및 하자보증금 환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인)				
수신처 : 석광건설(주)(대표 이 제임스 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73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 “감리자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7. 8(금) ~ 2011. 7. 14(목)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p>가. 사업명 : 당하지구 22블록 1~14로트 ○○아파트 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주)무궁화신탁 대표 송인명</p> <p>다. 시 공 자 : ○○건설</p> <p>다.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성</p> <p>라.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22블록 1~14로트 ○ 대지면적 : 25,062.5000㎡ ○ 연 면 적 : 69,672.9566㎡ ○ 규 모 : 지하2층, 지상15층, 공동주택9개동,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425세대 ○ 공사기간 : 2011. 09. 16 ~ 2013. 11. 15(26개월) ○ 사업계획(사업시행인가)승인 신청접수일 : 2010. 07 .27 ○ 사업계획승인일(사업시행인가일) : 2010. 10. 01. <p>마. 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160,859,950천원 ○ 대 지 비 : 70,175,000천원 ○ 총공사비 : 71,480,020천원 (일반관리비, 이윤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리대상 공사비 : 56,998,341천원 2.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천원 3.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14,481,679천원 <p>※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공사의 비용임.</p>	<p>바. 복수예비가격(VAT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비기준: 56,998,341,000원 (감리대상공사비의 2.382% 적용) 감리최고예비가격 : 1,352,268,980원 감리최저예비가격 : 1,276,237,655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276,237,655원 ② 1,281,670,267원 ③ 1,287,101,890원 ④ 1,292,531,954원 ⑤ 1,297,962,412원 ⑥ 1,303,393,448원 ⑦ 1,308,824,656원 ⑧ 1,314,255,603원 ⑨ 1,319,685,998원 ⑩ 1,325,116,100원 ⑪ 1,330,547,454원 ⑫ 1,335,978,255원 ⑬ 1,341,409,361원 ⑭ 1,346,839,150원 ⑮ 1,352,268,980원 <p>※ 산출범위: 97±3%</p>

-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선정신청서, 자기평가표, 참여감리원(비평가, 신규 포함)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별도 제출 할 것

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1. 07 .18 (월) ~ 2011. 07. 20 (수)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다.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①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접수 불가).

※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자는 문서로만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것

※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하고, 실령 감리자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법령을 검토하여 법의 엄정성을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관리할 것이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라. 지역가점 : 500세대 미만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관련 사·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만이 지역가점(1점)을 부여합니다.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입찰서개봉 및 발표 ⇒ 예정가격 추첨 ⇒ 예정가
가발표 ⇒ 순위(예비1 ~ 5순위)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
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①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74호, 2010.12.23.)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가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경과 상위 5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개찰일을 포함하여 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유선통보시 제출일시 지정)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④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⑤ 예비 상위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는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유동비율 : **165.57 %**

나. 평균자기자본비율 : **49.19 %**

※ 구비서류 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합니다.(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평가 대상 감리원 명단 기입)
- ②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③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서식]
 - 밀봉후 표지에 인감 날인하고 “감리비입찰서 및 감리회사명 등을” 명기 할 것
- ④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 ⑤ 증빙자료 :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

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기타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등 : 감리자지정신청자의 원본대조필로 사본 제출 가능(지역가점 및 입찰서 날인 확인)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①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제출
- ② 제출기한 : 개찰일 포함하여 4일이내(공휴일제외)
- ③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별지 제4호 서식)
 - 유의사항(재무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 ④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수주한 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수주금액 합계에 따라 배점
 - ※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당해 공사의 착공일·감리수행일(착공일과 감리수행일자가 상이한 경우 착공일 우선 적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주 한 금액은 공사진척율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 ⑤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⑥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⑦ 업무중첩도 관련 : 분야별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⑧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 ⑨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 ⑩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⑪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⑫ **감리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2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⑬ **본 공고문 붙임의 분야별 평가방법 및 [별첨 2], [별첨 3], [별첨 4]**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 ①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②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 ③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 토목, 기타설비),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하여도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9점)를 평가하므로 평가 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추가로 참여하는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단, 등급만 표시하는 감리원은 미제출 가능함)

- ④ 상기 “가” 항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
- ⑤ 상기 “가” 항 접수 시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⑥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 ⑦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공고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 응모한 경우 및 같은 응모번호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③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 한 경우도 포함) 및 입찰 금액이 아라비아숫자 금액과 한글표기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 ④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⑤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5순위까지 우리구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입찰 후 즉시 반환하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에 찾아가지 않는 서류에 대하여는 입찰종료 후 즉시 폐기처분함

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②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 3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건축, 토목, 기타설비)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함
 - 비평가 대상 감리원 전체 중 감리분야 구분 없이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함
- ③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②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 ④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감리사보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 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 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이 곤란한 경우 감리지정신청자에게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 ②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감리용역 업무가 감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금액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 등)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 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 등을 첨부 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74호(2010.12.23.)]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너.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6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처리 됨

더. 1,5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조경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머.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지정을 취소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6항에 따라 조치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각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각1부
3. 제출서류 양식 1식

접수번호

당하 22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2011. 00. .

(주)0000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리자 ~ 회사 ~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주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 무 중 첩 도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리원	⑫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p>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p>※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p>		

[별지 제2호 서식]

자기평가서

구분	평가항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정상태 건설도	유동비율	2			예) 00(%)	
		자본비율	2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14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3			예) 건축 0명외 0명	
	교체빈도		9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3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총괄 감리원	등급		6			예) 수석감리사	
	경력 및 실적		15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1				
감 리 원	등급	건축	2			예) 수석감리사	
		토목	2			예) 감리사	
		기타설비	2			예) 감리사	
	경력 및 실적	건축	6			예) 00(년)	
		토목	6			예) 00(년)	
		기타설비	6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4				
비상 주 감 리 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별지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1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가서

			평 가 일		
용역명		감리전문회사		사업주체	
용역기간		대표자		시공사	
감리비		연락처		공사기간	
총괄감리원		업종		공사금액	
총세대수				감리자 지정통보일	
사용검사일				감리계약체결일	

구분		평가항목	평정	
			만족	불만족
감리자		1) 조직상태		
		2) 감리업무지원 시스템		
		3) 감리원 기술교육		
감리원	총괄감리원	4) 근무성실도		
		5) 기술능력		
		6) 감리원 통솔능력		
	분야별감리원	7) 근무성실도		
		8) 기술능력		
		9) 검측 및 확인업무의 적정성		
비상주감리원	10) 근무성실도			
	11) 기술능력			

총평 : 만족(), 불만족()

○

○

※ 11개 항목중 7항목이상 만족인 경우 만족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만족, 불만족 여부를 우선 기재한 후, 총평란에 전체적인 평가를 요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년 ○월 ○일부로 완료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감리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 및 평가자 : ○○사 대표이사
○○○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 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해 제출

□ 분야별 평가방법(산출근거 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소계	50	• 가정 및 감점은 별도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평가 : 감리자의 유동비율/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 × 100(%)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기준 적용(2점) - 배점기준																										
(1)재무상태 건 실 도	4	<table border="1"> <tr> <td>기 준</td> <td>100% 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 미만</td> </tr> <tr> <td>배 점</td> <td>2</td> <td>1.8</td> <td>1.5</td> <td>1.3</td> <td>1</td> </tr> </table>	기 준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배 점	2	1.8	1.5	1.3	1														
		기 준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배 점	2	1.8	1.5	1.3	1																							
		●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평가 : (감리자의 자본비율/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 100(%)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기준 적용(2점)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기 준</td> <td>100% 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 미만</td> </tr> <tr> <td>배 점</td> <td>2</td> <td>1.8</td> <td>1.5</td> <td>1.3</td> <td>1</td> </tr> </table>	기 준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배 점	2	1.8	1.5	1.3	1														
기 준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배 점	2	1.8	1.5	1.3	1																							
산출근거		- 유동비율 평가(유동자산/유동부채 기재) (산출식 기재)																										
		- 자본비율 평가(자기자본/총자산 기재) (산출식 기재)																										
(2)감리업무 수행실적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수주한 「주택법」(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포함)·「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건축공사는 80%인정)의 감리 수주금액 합계에 따라 배점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table border="1"> <tr> <td>공사규모</td> <td colspan="3">기준 및 배점</td> </tr> <tr> <td>1천세대 이상</td> <td>200이상</td> <td>200미만 100이상</td> <td>100미만</td> </tr> <tr> <td>1천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td> <td>100이상</td> <td>100미만 50이상</td> <td>50미만</td> </tr> <tr> <td>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 <td>50이상</td> <td>50미만 10이상</td> <td>10미만</td> </tr> <tr> <td>300세대 미만</td> <td>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배 점</td> <td>12</td> <td>10.5</td> <td>9</td> </tr> </table>	공사규모	기준 및 배점			1천세대 이상	200이상	200미만 100이상	100미만	1천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배 점	12	10.5	9		
		공사규모	기준 및 배점																									
		1천세대 이상	200이상	200미만 100이상	100미만																							
		1천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배 점	12	10.5	9																									
산출근거		억원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3) 행정제재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동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 : 1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 : 2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3점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구 분</td> <td>3년미만</td> <td>3년 이상 6년 미만</td> <td>6년 이상 10년 미만</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able>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구분</td> <td>3% 이상</td> <td>3.0% 미만 2.5% 이상</td> <td>2.5% 미만 2.0% 이상</td> <td>2.0% 미만 1.5% 이상</td> <td>1.5% 미만 1.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2.5</td> <td>2.0</td> <td>1.5</td> <td>1.0</td> <td>0.5</td> </tr> </table> ● 교육훈련(0.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감리원이 최근2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소수점 세째자리 반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구 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구 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산출근거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훈련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5)신규감리원배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소속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당해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평가방법 (단위 : 천세대)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000세대 미만</td> <td>1천세대 이상 1천5백세대미만</td> <td>1천5백세대이상 2천세대 미만</td> <td>2천세대 이상</td> </tr> <tr> <td>0명</td> <td>3.0점</td> <td>0점</td> <td>0점</td> <td>0점</td> </tr> <tr> <td>1명</td> <td>3.0점</td> <td>2.0점</td> <td>1.0점</td> <td>0점</td> </tr> <tr> <td>2명</td> <td>3.0점</td> <td>3.0점</td> <td>2.0점</td> <td>1.0점</td> </tr> <tr> <td>3명</td> <td>3.0점</td> <td>3.0점</td> <td>3.0점</td> <td>2.0점</td> </tr> <tr> <td>4명이상</td> <td>3.0점</td> <td>3.0점</td> <td>3.0점</td> <td>3.0점</td> </tr> </table>	구분	1,000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1천5백세대미만	1천5백세대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0명	3.0점	0점	0점	0점	1명	3.0점	2.0점	1.0점	0점	2명	3.0점	3.0점	2.0점	1.0점	3명	3.0점	3.0점	3.0점	2.0점	4명이상	3.0점	3.0점	3.0점	3.0점		
구분	1,000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1천5백세대미만	1천5백세대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0명	3.0점	0점	0점	0점																														
1명	3.0점	2.0점	1.0점	0점																														
2명	3.0점	3.0점	2.0점	1.0점																														
3명	3.0점	3.0점	3.0점	2.0점																														
4명이상	3.0점	3.0점	3.0점	3.0점																														
산출근거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4																																	
(6)교체빈도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배점기준 • 교체빈도율(%) = $\frac{\text{최근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table border="1"> <tr> <td>비율</td> <td>5%미만</td> <td>5%이상 10%미만</td> <td>10%이상 15%미만</td> <td>15%이상 20%미만</td> <td>20%이상</td> </tr> <tr> <td>배점</td> <td>9</td> <td>7</td> <td>5</td> <td>3</td> <td>0</td> </tr> </table> <p>※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p>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배점	9	7	5	3	0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배점	9	7	5	3	0																													
산출근거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4																																	
(7)감리업무수행계획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산정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3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00미만</td> <td>500이상 1,500미만</td> <td>1500이상 2,500미만</td> <td>2,500이상</td> </tr> <tr> <td>쪽 수</td> <td>15쪽이상</td> <td>20쪽이상</td> <td>25쪽이상</td> <td>30쪽이상</td> </tr> <tr> <td>부 문 (내 용)</td> <td colspan="4">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td> </tr> </table> <p>※ 감리업무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없음</p>	구 분	500미만	500이상 1,500미만	1500이상 2,500미만	2,500이상	쪽 수	15쪽이상	20쪽이상	25쪽이상	30쪽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구 분	500미만	500이상 1,500미만	1500이상 2,500미만	2,500이상																														
쪽 수	15쪽이상	20쪽이상	25쪽이상	30쪽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산출근거	- 감리업무수행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8)가점 소계	(3)											
8-1.감리업무 수행결과 가산	(1)	<p>○ 평가 및 산정방법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전년도 “감리업무 수행결과”의 평정결과 중 “만족”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배점기준</p> <table border="1"> <tr> <td>비율(%)</td> <td>90%이상</td> <td>9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r> <tr> <td>배점</td> <td>1.0</td> <td>0.75</td> <td>0.5</td> </tr> </table> <p>※ 전년도 감리업무수행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점(0.5)으로 평가한다.</p>	비율(%)	90%이상	9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배점	1.0	0.75	0.5		
비율(%)	90%이상	9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배점	1.0	0.75	0.5									
산출근거		- 만족비율 : 만족건수/전년도 전체평정건수 × 100 =										
8-2.지역가점	(1)	<p>-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 배점기준</p> <table border="1"> <tr> <td>배점</td> <td>주택건설지역</td> </tr> <tr> <td>1</td> <td>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td> </tr> </table>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산출근거												
8-3.설계용역 수행가산	(1)	<p>-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p> <p>-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p>										
산출근거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9)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9-1.감리원 배치계획	(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각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맞추어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단, 비평가대상감리원 1인에 한하여 부분배치도 가능 함 ; 법정 기준 인·월수 초과시)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 합니다.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배치에 대한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합니다.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 「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 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산출근거				
9-2. 업무중첩도	(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 총괄감리원 또는 분야별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에 총괄·책임·분야별, 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되어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비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원포함)에 총괄·책임·분야별·보조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5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만, 분야별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감리자지정권자는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분야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근거				

나. 감리원

나-1. 총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1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1점 이내														
(1) 등 급	6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준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 1천세대 이상은 수석감리사 이상 : 6점 ◦ 1천세대 미만은 감리사 이상 : 6점														
산출근거																
(2) 경력 및 실적	15	- 감리원 분야별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한 후 아래의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1천세대 이상</td> <td>12년 이상</td> <td>12년미만 10년이상</td> <td>10년미만 8년이상</td> <td>8년미만 6년이상</td> <td>6년 미만</td> </tr> <tr> <td>배점</td> <td>15</td> <td>13</td> <td>11</td> <td>9</td> <td>7</td> </tr> </table>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 미만	배점	15	13	11	9	7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 미만									
배점	15	13	11	9	7											
<table border="1"> <tr> <td>1천세대 미만</td> <td>8년이상</td> <td>8년미만 6년이상</td> <td>6년미만 4년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배점</td> <td>15</td> <td>13</td> <td>11</td> <td>9</td> </tr> </table>	1천세대 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배점	15	13	11	9						
1천세대 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배점	15	13	11	9												
산출근거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3) 자격가점	(0.2)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4) 행정제재 감 점	(-2)	- 평가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5) 교체빈도 감 점	(-1)	◦ 감리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산출근거																

나-2. 분야별감리원

- 3명(건축·토목·기타설비분야)을 각각 심사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감리원은 2명(토목, 설비)만 심사하고, 등급·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는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정하며, 가정·감정에 대하여는 배점기준으로 평정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4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분야별감리원 각8점(24점) 이내				
(1) 등 급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준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수석감리사 2	감리사 1.8	감리사보 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감리사 이상 2		감리사보 1.8	
		300세대 미만	감리사보			
			2			
산출근거	2	- 건축 : 등급				
	2	- 토목 : 등급				
	2	- 기타설비 : 등급				
(2)경력 및 실적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및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아래의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 함. ◦ 배점기준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6	5.4	4.8	4.2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6	5.4		4.8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6		5.4			
산출근거	6	- 건축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6	- 토목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6	- 기타설비: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3)자격가점	(0.1) ×3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 직무분야가 건축, 기계, 토목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0.1)	- 건축 : 자격사항			
	(0.1)	- 토목 : 자격사항			
	(0.1)	- 기타설비 : 자격사항			
(4)행정제재 감점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근거	(-1)	건 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토 목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기타설비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5)교체빈도	(-0.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산출근거	(-0.5)	- 건축 :			
	(-0.5)	- 토목 :			
	(-0.5)	- 기타설비 :			
<p>나-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p>					

나-3. 비상주 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5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5점 이내										
(1) 등 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준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 수석감리사 이상 : 2.0점 ◦ 감리사 이상 : 1.5점 ◦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		등급 :										
(2) 경력 및 실적	3	- 감리원 분야별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한 후 아래의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경 력</td> <td>10년이상</td> <td>10년미만 5년이상</td> <td>5년 미만</td> </tr> <tr> <td>배 점</td> <td>3점</td> <td>1.5</td> <td>0점</td> </tr> </table> ※ 건축분야감리원이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 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3점	1.5	0점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3점	1.5	0점									
산출근거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3) 행정제재 감 점	(-1)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할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산출근거		업무정지등 기간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점)										
(4) 교체빈도 감 점	(-1)	◦ 감리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산출근거		교체건수 : 상주(건) , 비상주 (건)										
나-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 비고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74(2010.12.2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다.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등급	평점
	사 업 명	기 간					
총 괄 감 리 원						일 년	
	소 계						
대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비 상 주 감 리 원 (1명)						일 년	
	소 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 명	분 야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 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및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 분	경 력 사 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 고
	사 업 명	기 간				
신 규 감 리 원						
		소 계				일 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7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7. 8(금) ~ 2011. 7. 14(목)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p>가. 사 업 명 : 당하지구 22블록 1~14로트 ○○아파트 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주)무궁화신탁 대표 송인명</p> <p>다. 시 공 자 : ○○건설</p> <p>다.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성</p> <p>라.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22블록 1~14로트 ○ 대지면적 : 25,062.5000㎡ ○ 연 면 적 : 69,672.9566㎡ ○ 규 모 : 지하2층, 지상15층, 공동주택9개동,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425세대 ○ 공사기간 : 2011. 09. 16 ~ 2013. 11. 15(26개월) ○ 사업계획(사업시행인가)승인 신청접수일 : 2010. 07 .27 ○ 사업계획승인일(사업시행인가일) : 2010. 10. 01. <p>마. 사 업 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160,859,950천원 ○ 대 지 비 : 70,175,000천원 ○ 총공사비 : 71,480,020천원 (일반관리비, 이윤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리대상 공사비 : 6,335,418천원 2.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천원 3.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65,144,602천원 <p>※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공사비는 건축, 정보통신, 소방설비공사의 비용임.</p>	<p>바. 복수예비가격(VAT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범위 : 감리대가의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47,219,159원 ② 348,697,233원 ③ 350,173,690원 ④ 351,652,455원 ⑤ 353,128,802원 ⑥ 354,607,985원 ⑦ 356,085,123원 ⑧ 357,562,256원 ⑨ 359,038,664원 ⑩ 360,517,313원 ⑪ 361,993,987원 ⑫ 363,473,512원 ⑬ 364,948,900원 ⑭ 366,426,805원 ⑮ 367,903,354원 <p>※ 산출범위: 97±3%</p>

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1. 07 .18 (월) ~ 2011. 07. 22 (금)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다.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①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접수 불가).

※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자는 문서로만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것

※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하고, 실령 감리자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법령을 검토하여 법의 엄정성을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관리할 것이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

(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치 하기 바람. (배치관련 문의 전화 상담은 일체 하지 않음)

※ 보조감리원 평가기준 : 2인 이상인 경우 2인만 평가함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의거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 평가는 만점처리 함

○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증빙할 경우 제외 함)

9.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유동비율 : 147.28%

나. 평균자기자본비율 : 45.45%

※ 구비서류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합니다.(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입찰시)

1) 감리업자선정 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감리비입찰서- 신청서 제출시에 입찰서도 제출하되, 입찰서는 별도 이중봉투에 봉인 후 실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밀봉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아래 전기분야 표기, 대상사업 명, 감리회사명 표기

아 래

분야	접수번호
전기	

3)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I .총괄표 + 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5). 감리배치계획표 1부 - 별첨양식 작성·제출

6). 감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4) 업무중첩도 관련 감리지정권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상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감리원 「응모자격제한시점」 참조

5)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6)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작성 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7) 서약서

8)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9) 그밖에 평가서류(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등)

※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여 제출 할 것.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 기한내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10)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 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 ㉡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 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 ㉢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 ㉣ PQ평가시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합산
- ㉦ PQ입찰 서류 제출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 하고 허위 기재시 탈락 처리함

마)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참여감리원 란에는 비평가감리원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하지 않을 시 실격 처리함[비평가는 보조감리원(비평가)로 표시]

바)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해당업체에 한함)

사)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공고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되는 경우 : 실격

아)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시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만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작성자의 실수로 [별첨 1, 2]양식에서 누락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서류는 상기순번에 따라 상철하고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 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2009.8.21)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낙찰자결정 및 감리업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입찰서개봉 및 발표 ⇒ 예정가격 추첨 ⇒ 예정가격 평균가 발표 ⇒ 순위(예비1~5순위)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상위 5위업체 추가서류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결격여부 등 조회) ⇒ 감리자지정 통보

다.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라.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조의3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 하며, 제10조의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마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바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2.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등

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자는 제외)

나. **공고번호 기준 1개사가 2건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입찰금액이 아라비아 숫자금액과 한글 표기 금액이 다른 경우 포함)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와 서류접수 등록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사용인감계 제출 시에는 제외)
- 마. 담합 또는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13. 기타사항

-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나. 응모서류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합니다.
-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 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교육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마. 8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 가점 가산(1.5)을 합니다.
- 바.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및 감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자로 감리업자를 선정하며 부정행위 감리업자는 부정행위 일부터 1년간 5점을 감점함.
- 사. 감리비입찰서는 비밀유지를 위해 이중봉투로 밀봉하고, 접합부에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응모번호, 사업주체, 감리자 상호를 기재한다.
- 아.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 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 자.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 차.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 카.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 합니다.
- 타.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 파.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하. **제출된 응모서류는 교환 또는 수정할 수 없고**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단, 감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거.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제 출					미제출	구 분		제 출					미제출
		적 합		부 적 합						적 합		부 적 합			
작업기법		수	우	미	양	가		수행계획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점 수		3	2.7	2.4	2.1	1.8	0
평 가 기 준	내 용	문 제 점 조치사항 대책방안		적 합		부 적 합			수행계획	적 합		부 적 합			-
									배치계획	적 합		부 적 합			-
	쪽 수	3쪽 내외	2쪽 미만	-			-			쪽 수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2009. 8.21))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담당자[편해정: 032)560-4732]에게 문의 바랍니다.

- 첨부
1.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각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각1부
 3. 제출서류 양식 1식

접수번호

당하 22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

2011. 00. .

(주)0000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주)무궁화신탁	대표자	송인명	
사업계획 내용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22블록 1~14로트		대지면적	25,062.5000㎡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아파트 412세대 및 부대시설	69,672.9566㎡	2011.08	2013.09
설계업자	대표자	이봉희	상 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성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60-42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 송)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			
보조(비평가)	-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 업자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재무상태 건 실 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작업계획및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등급/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 확인서
	②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업무중첩도·교체 빈도·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회전율		총매출액	총자산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 (전기부문)		총매출액 (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3차년	
		2차년		2차년	
		1차년		1차년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p>※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p>					

[별지 참고서식]

감리원 배치계획표

용역명 :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22블록 1~14로트 공동주택 신축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전기공사기간 : 200 . . ~ 200 . . (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투 입 일 자																																								개월	비고 (배치기간)																																						
			2010										2011										2012										2013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책임	○ ○ ○	특급																																																																																
보조	○ ○ ○																																																																																	
비상주	○ ○ ○																																																																																	

※ 위 표는 감리원별 배치기간 작성예시로서 책임, 보조, 비상주 배치인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정 상태 건실도	(1) 자본 비율	(1.0)			
	(2) 유동 비율	(2.0)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2) 유동비율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 실적	-	(4)			
나. 기술개 발투자 실적	-	(4)			
다. 교육 실적	-	(2)			
산출근거			가. 개발실적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다. 교육실적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점=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점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 감리원	-	(6)			
나. 비상주 감리원	-	(4)			
산출근거			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6. 교체빈도		[5]			
가. 감리 업체	-	(2.5)			
나. 참여 감리원	-	(2.5)			
산출근거			가. 감리업체 :		
			나. 참여감리원 :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 행계획	-	(3)			
나. 작업 기법	-	(2)			
산출근거			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업기법 :		

8. 가정 및 감점		[2.5] [-5]		
가.가점	(1) 지역	(1.5)		
	(2)책임감리원	(1)		
	산출근거		(1) 지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나. 감점	부실벌점	(-5)		
	산출근거		○ 부실벌점 :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책 임 감 리 원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일 년		
	[부표 3-1] 라목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보 조 감 리 원							
		합 계				일 년	

감리업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 호
 사업명 :
 사업주체 :

본 업체는 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공고한 위 사업에 대하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착오, 오기)한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감리업자 선정 취소 및 행정처분 등 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1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742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신조 및 폐기 사유 : 2011. 7.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및 부서명 변경
2. 신조 및 폐기 연월일 : 2011. 7. 1
3. 신조 및 폐기공인 인영 : “붙임참조”



신조공인 인영

연 번	신조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1	인천광역시서구 사회복지과분임경리관인	2.0X2.0		2011.7.1 조직개편
2	인천광역시서구 사회복지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X1.8		"
3	인천광역시서구 사회복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
4	인광역시서구 사회복지과분임징수관인	2.0X2.0		"
5	인천광역시서구 사회복지과물품운동관인	2.0X2.0		"






신조공인 인영

연 번	신조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6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복지과분임경리관인	2.0X2.0		2011.7.1 조직개편
7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복지과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X1.8		"
8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복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
9	인광역시서구 가정복지과분임징수관인	2.0X2.0		"
10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복지과물품운용관인	2.0X2.0		"



신조공인 인영

연 번	신조공인명	규 격	인 영	비고
11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복지과여성발전기금 운영관인	2.0X2.0		2011.7.1 조직개편
12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복지과여성발전기금 출납원인	1.8X1.8		"

폐기 공인 인영

연 번	폐기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1	인천광역시서구 복지서비스과분임경리관인	2.0X2.0		2011.7.1 조직개편
2	인천광역시서구 복지서비스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X1.8		"
3	인천광역시서구 복지서비스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
4	인광역시서구 복지서비스과과분임징수관인	2.0X2.0		"
5	인천광역시서구 복지서비스과물품운용관인	2.0X2.0		"

폐기 공인 인영

연 번	폐기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6	인천광역시서구 복지서비스과여성발전기금 운영관인	2.0X2.0		2011.7.1 조직개편
7	인천광역시서구 복지서비스과여성발전기금 출납원인	1.8X1.8		"